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. 1. 28 선고 2015가단78539(본소), 2015가단87793(반소) 판결
[주식매매대금 잔금 청구의 소 · 대여금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A

피고(반소원고)B

변론 종결 2016. 1. 7.

판결 선고 2016. 1. 28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
2.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(반소피고)가,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본소 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 한다)에게 17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6. 7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반소 : 원고는 피고에게 60,000,000원 및 그 중 1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07. 6. 7.부터,

나머지 5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07. 7. 1.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C은 2005. 5. 18.경 피고와 사이에 망 C 소유의 주식회사 D의 주식 145,571주에 관한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는데, 매매대금은 피고가 망 C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 및 체납세금 등을 대위변제하고, 700,000,000원을 망 C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, 위 주식이 피고 명의로 넘어간 사실, 원고가 망 C의 단독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2.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

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망 C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700,000,000원 중 370,000,000원을 지급하고, 나머지 330,000,000원 중 100,000,000원은 그 즉시, 나머지 230,000,000원은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와 동시에 또는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, 그 중 100,000,000원은 위 약정과 동시에 지급받고, 나머지 230,000,000원 중 60,000,000원만을 2007. 6. 7.과 2007. 7. 10. 2회에 걸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,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그러나, 피고가 망 C에게 2005. 9. 13.경 230,000,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도 다툼이 없으므로(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본소 청구를 취하하였으나,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다), 원고의 위 매매잔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

피고는 망 C을 대리한 E의 부탁으로 망 C에게 2007. 6. 7. 10,000,000원, 2007. 7. 10. 50,000,000원 합계 60,000,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,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한다.

피고가 망 C의 계좌로 2007. 6. 7. 10,000,000원, 2007. 7. 10. 50,000,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나아가, 위 60,000,000원이 대여금인지 보건대, 이에 부합하는 을 제14호증의 기재, 증인 F의 증언은, 을 제14호증(F 확인서)은 피고가 작성하여 온 것을 증인이 서명 날인만 한 것이고, 위 대여 당시 매매계약서(갑 제3호증) 작성 여부,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위 확인서의 내용 및 증인 F의 증언 내용이 불일치하는 점, 증인과 피고의 관계, 피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돈에 관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는 점, 위 돈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망 C 또는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급 청구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거나,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결국, 피고의 위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경은